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연령 결격사유 완화〉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089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2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연령 결격사유 완화	2

I . 개요

1. 정부제출(의안번호 제2089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7. 22.
- (3) 회 부 일 : 2024.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II. 검토의견

1.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연령 결격사유 완화

-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미성년자를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1. <u>미성년자</u> 2. ~ 6. (생략) ② (생략)	제12조(결격사유) ① ----- ----- -----. 1. <u>18세 미만인 사람</u> 2.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책무를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생애주기별 노후준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한편, 현행법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와 관련한 규정으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사업(제6조),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양성을 위한 교육(제11조) 및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결격사유 및 금지행위(제12조, 제13조)를 두고 있음¹⁾.

- 그리고 노후준비서비스²⁾ 제공자는 중앙·광역·지역센터에서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 노후준비를 위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인력 현황 >

(기준일: '24. 7. 1., 단위: 명)

구분	계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지자체
		전문상담사	전문강사	민간 전문강사	
인원	208	89	35	58	26

주: (전문상담사·전문강사) 국민연금공단 내부직원 중 전담직원 선정·양성
(민간 전문강사) 국민연금공단 외부 민간인력 공개모집
(지자체) 광역·지역센터로 지정된 기관의 내부인력이 주로 겸직
자료: 보건복지부

1) 「노후준비 지원법」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5.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7.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8.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국제협력
9. 그 밖에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센터, 광역센터 또는 지역센터에서 노후준비와 관련한 진단, 상담 및 교육 등을 수행하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제13조(금지행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업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특정 회사 또는 그 임직원(「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포함한다)을 소개하는 행위
2. 특정 회사의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가입을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

2)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노후준비서비스”란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적절한 노후준비를 위하여 제공하는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말한다.

-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은 없으나, 국민연금공단(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은 전문성에 기반한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 전문강사에 한정하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특정 자격 보유를 요건으로 두고 있음.

< 민간 전문강사 보유 요건 자격증 >

전문자격증	변호사, 공인회계사, 보험계리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노후준비지원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자격증	사회복지사 1·2급, 한국재무설계사(AFPK), 국제재무설계사(CFP), 보건교육사, 생활체육지도사(건강운동관리사, 스포츠지도사), 건강가정사, 직업상담사
기타 4대 영역(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관련 자격증	임상심리사 1·2급, 평생교육사 1·2·3급, 법무사, 세무사, 자산관리사(은행FP), 손해사정사, 은퇴설계전문가(ARPS)

자료: 보건복지부

- 개정안은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연령제한을 현행 ‘미성년자(「민법」 3)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미성년자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검정고시 합격자 등 청년들도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 자격에서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도록 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그 서비스 제공이 잘못 전달될 경우 미성년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3)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는 법정교육을 이수하고, 지자체가 지정한 광역·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소속되어 관리·감독을 받는 직원으로서 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서비스 수요자와 다툼이 발생할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98